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집체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전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대상 : '19년도 교육인정 사업장, **신규사업장 교육수강 불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사업주"대상 교육으로서, 반드시 사업주께서 교육수강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계획서 제출안내

①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인터넷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한하여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인터넷 교육 : www.safetyedu.net

② 산재예방계획서는 사업주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산재예방계획서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제출처는 인터넷 교육 이수시 선택한 과정(지역)과 동일한 해당 광역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과정명]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인천, 경기)을 이수한 경우 인천광역본부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인터넷 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예방요율제 적용 사업장(보험요율 할인)이 됩니다.

[제출처]

기관명	연락처	팩스	관할구역
인천광역본부	032-510-0646 032-510-0647	032-712-2835	인천광역시, 경기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안내

설 명 :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대상 교육

대 상 :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의 책임자

※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2시간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교육수수료 : 무료

교육내용 :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수강방법 : 인터넷교육센터 이용(www.safetyedu.net)

문 의 : 032) 510-0646~7 팩 스 : 032) 712-2835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교육센터)

안전은
권리입니다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안내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개설 과정

대상	과정명	시간
사업주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4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2
	패트롤 점검대상 사업주교육(추락·질식·끼임)	2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관계자교육	2
	끼임 사고예방 교육	2
	6대 질식위험장소 관계자교육	2
	지게차 보유사업장 관리감독자(운전자)교육	2
	건설현장 화재·폭발 현장관리자 교육	2
	건설현장 화재·폭발 화재감시자 교육	4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하는 정기교육으로 인정 가능

※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근로자 분기별 3시간(사무직) 또는 6시간(비사무직)

「코로나19」 관련 수강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신청 절차

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접속

www.safetyedu.net

2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정보 입력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 회원가입

3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입력
(반드시 본인이 속한 사업장 정보 입력)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 회원가입

4 상단 메뉴 '인터넷교육신청' 하위의
'코로나19(한시적교육)' 클릭

인터넷교육신청 > 코로나19(한시적교육)



5 수강 희망 과정 수강신청

인터넷교육신청 > 코로나19(한시적교육) > 수강 희망 과정 수강신청

6 상단 메뉴 중 '나의 강의실' 하위
'수강중과정' 클릭

나의강의실 > 수강중과정

7 신청 과정 확인 후, [강의실 입장] 클릭

나의강의실 > 수강중과정 > 강의실입장

8 대리수강방지 등의 안내문 확인 후
본인인증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한함]

대리수강방지 등의 / 본인인증